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김소희 · 김상훈 · 서천호

김형동 · 백종현 · 김승수

주호영 · 박덕흠 · 최형두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 · 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.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.

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,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또한,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제18호, 제47조의2,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)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기후보험”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·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.

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기후보험의 운영)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·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, 대상, 가입 방식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3(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

운영해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, 보험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·운영하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(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)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

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
·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
법」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“기후보험”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·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47조의2(기후보험의 운영)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·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, 대상, 가입 방식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47조의3(기후보험 종합정보시

스템의 구축 · 운영)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· 관리 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해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, 보험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 · 운영하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

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(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)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

① ~ ② (생략)

<신설>

제8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정부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에 따
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